

배부번호 총무담당관실-6437
(2006.6.19.09:34)

진정서

진정인: 김명호

서울시 동작구 상도 415 번지 중앙하이츠빌 105 동 1504 호
전화 번호: 010-5590-8913

피진정인: 대법원장 이용훈

137-750,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967(서초로 219)

참조: 서울 고등법원 민사 2부 박홍우 부장판사

대법원장님,

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대법원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. 진정인은 10년 전에 부당하게 재임용 탈락한 전 성대 수학과 교수 김명호입니다.

제가 이렇게 대법원장님께 진정을 드리는 것은, 진정인의 사건

사건: 2005 나 84701 교수지위확인

원고: 김명호

피고: 성균관 대학교

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 2 합의부(부장판사 박홍우)가, 재판 선고지연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

위 사건은 5월 26일 변론 종결, 선고 기일이 6월 16일로 지정되었던 것입니다. 그러나, 박홍우 재판장은 7월 21일로 연기함으로써, 진정인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.

만약 연기사유가, 민사소송법 제 448 조에 따라, 진정인이 (6월 2일)제출한 재항고 및 특별항고 결정을 기다린다는 것이라 한다면,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박홍우 판사의 한 달여 연기 결정은 법 해석을 왜곡한